

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제3절제4-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영 제171조제3항제7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주권상장법인이 미리 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(이하 “전환사채매수선택권”)를 제3자에게 부여한 전환사채를 발행(발행 이후에 제3자가 결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고 그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 행사된 때

2. 주권상장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결정한 때

제4장제3절제4-5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제4-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

가. 계약서 등 제3자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 또는 주권상장법인의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 매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나. 제5-21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비율의 증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제5장제3절제5-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주권상장법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(이하 이 조에서

“최대주주등”이라 한다)에게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(주권상장법인이 자신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최대주주등이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각자 발행당시 보유(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재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)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.

제5장제3절제3-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(나목의 사항은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)을 정하여야 한다.

가. 증자·주식배당 또는 시가변동 등 전환가액을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,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(이하 "조정일"이라 한다)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

나. 시가변동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한 경우 하향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가목에 따른 조정일에 전환가액을 상향조정 해야한다는 내용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

3. 제1호나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(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) 이내에서 제2호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이사회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규제의 재검토) 금융위원회는 제5-22조에 따른 최대주주등과 관련한 전환사채매수선택권 제한 및 제5-23조에 따른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대하여 2024.12.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제3절 주요사항보고서의 공시</p> <p>제4-4조(중요한 자산양수·도의 예외 등) 영 제171조제2항제5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·양도"란 해당 법인의 사업목적 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업행 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절 주요사항보고서의 공시</p> <p>제4-4조(중요한 자산양수·도의 예외 등) ① (본문 및 각 호와 내용 동일)</p>	<p>② 영 제171조제3항제7호에서 “<u>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</u>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1. <u>주권상장법인이 미리 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(이하 “<u>전환사채매수선택권</u>”)를 제3자에게 부여한 전환사채를 발행(발행 이후에 제3자가 결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고 그 <u>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 행사된 때</u></u></p> <p>2. <u>주권상장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결정한 때</u></p>	<p>제4-5조(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등) ① 영 제171조제4항제8호에서</p>	<p>제4-5조(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"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"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5. (생략)

<신 설>

제5-21조(전환사채의 발행제한 및 전환금지기간)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는 「상법」 제513조의2제1항에 따라 주주에게 사채의 인수권을 부여하여 모집하거나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사채를 모집하는 방식(이하 이 절에서 "공모발행방식"이라 한다) 외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.

1. ~ 3. (생략)

②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. (단서 생략)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제4-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

가. 계약서 등 제3자의 전환사채 매수선택권 행사 또는 주권상장법인의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 매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나. 제5-21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비율의 증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제5-21조(전환사채의 발행제한 및 전환금지기간) ①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5-23조(전환가액의 하향조정)
주권상장법인이 전환가액을 하향하여
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
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
따라야 한다.

1. 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
에서 증자·주식배당 또는 시가변
동 등 전환가액을 하향조정 하
고자 하는 각1 사유별로 전환가
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,
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
는 날(이하 "조정일"이라 한다)
및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정하여
야 한다.

③ 주권상장법인이 최대주주 또는
그의 특수관계인(이하 이 조에서
“최대주주등”이라 한다)에게 전환
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전환
사채를 발행하는 경우(주권상장법
인이 자신이 발행한 전환사채를
취득한 후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
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최대주
주등이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의 행
사로 각자 발행당시 보유(누구의
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
하는 경우를 말한다)한 주식 비율
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
도록 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
여야 한다.

제5-23조(전환가액의 하향조정)

-----.

1. 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
회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(나목
의 사항은 공모발행방식으로 발
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
한다)을 정하여야 한다.
가. 증자·주식배당 또는 시가변동 등
전환가액을 하향조정 하고자
하는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을
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, 전환

2. (생략)

<신설>

가액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(이하 "조정일"이라 한다)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

나. 시가변동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한 경우 하향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가목에 따른 조정일에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해야한다는 내용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

2. (현행과 같음)

3. 제1호나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(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)이내에서 제2호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